심 사 보 고 서

【남양주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안】

의 안 번 호	435

2024. 6. 11.
자치행정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24. 5. 31. / 정현미 의원 등 9명

나. 회부일자 : 2024. 5. 31.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 : 2024. 6. 11.

2. 제안설명 요지

가. 제안이유

○ 남양주시 문화콘텐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문화콘텐츠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주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○ 조례의 목적, 정의 및 시장의 책무를 규정(안 제1조~제3조)

○ 문화콘텐츠산업의 중·장기 기본계획 수립 등을 규정(안 제4조)

○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(안 제5조)

○ 문화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의 설치·기능·구성을 규정(안 제6조~제7조)

○ 위원의 해촉 및 제척·기피·회피 등을 규정(안 제8조~제9조)

○ 위원장 등의 직무 및 회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(안 10조~제11조)

○ 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및 수당 등을 규정(안 제12조~제13조)

3. 검토보고 요지 (전문위원 서진원)

○ 본 조례안은 문화콘텐츠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우리 시 관련 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,

지역의 방송, 영화, 게임, 음악 등 지역의 문화콘텐츠산업이 대부분 영세하고 취약한 문제점이 있는 점을 보완하고 지원함으로써 문화콘텐츠 산업의 생태계 조성과 저변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.

4. 질의 · 답변 요지

○ 회의록 참고

5. 토론요지

○ 없　　음

6. 심사결과

○「원안가결」

7. 소수의견 요지

○ 없　음

붙임 : 남양주시 문화콘텐츠산업 조례안 1부.